

의안번호	제 170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연월일 : 2023. 1.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한계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안 제5조)

- 1) 교육장에게 위임한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일부 삭제함 (안 제5조제38호)
- 2)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정함 (안 제5조제39호)

나.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안

(안 제5조제1호, 제6호, 제15호나목, 제34호, 제41호바목, 제6조1호, 6호, 11호, 제7조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합의되었음(학교혁신과, 미래인재과)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2022. 11. 18. ~ 2022. 12. 8.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립”을 “공사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나목 중 “취·해임”을 “취임·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4호 중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1호바목1) 중 “유·무선망”을 “유무선망”으로 한다.

가.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

제6조제6호 중 “중·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가목 중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1. <u>공·사립</u> 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 아. (생략)	1. <u>공사립</u> ----- -----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6. ----- ----- ----- <u>6개월</u> ----- ----- <u>6개월</u> ----- ----- ----- -----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1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	15. ----- ----- -----

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
항

가. 삭제

나. 법인의 임원 취임·해임 승
인

다. ~ 자. (생략)

16. ~ 32. (생략)

33. 삭제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의한 관할 수탁기관에 대
한 감사에 관한 사항

35. · 36. (생략)

37. 삭제

38. 관할구역 내 공·사립 일반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
독

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
항

나.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
한 장학지도

다. 진로·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

--

나. ----- 취임·해임 -
-

다. ~ 자. (현행과 같음)

16. ~ 32. (현행과 같음)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
조-----

35. · 36. (현행과 같음)

<삭제>

라.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노동인권교육

나. (생략)

40. (생략)

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 마. (생략)

바.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략)

42. (생략)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39. -----

가.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

나. (현행과 같음)

40. (현행과 같음)

4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1) 유무선망 -----

2) (현행과 같음)

42. (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의 휴직(6월 미만) · 복직(6월 미만 휴직) 2. ~ 5. (생 략) 6. 공립 <u>중 · 고등학교</u>의 학생 학비 감면 7. ~ 10. (생 략)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되는 자 나. · 다. (생 략)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 · 복직(6월 미만 휴직) 2. ~ 8. (생 략)	-----6개월 -----6개월 ----- 2. ~ 5. (현행과 같음) 6. --- <u>중고등학교</u>----- ----- 7. ~ 10. (현행과 같음) 11. ----- -----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 ----- 나. · 다. (현행과 같음)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1. ----- -----6개월 -----6개월 ----- 2. ~ 8. (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시행2022. 4. 20]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한계를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장 황경식